

2019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법무부 소관)

2020. 4.

대한민국정부

- 목 차 -

(법무부 본부 : 24건)

1. 집중관리 검사 명단을 작성하여 집중감찰을 하고, 이를 검사 적격심사 및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일종의 검사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것이어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므로 법무부는 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고할 것 1
2. 법무감찰개혁위원회의 위원구성이 특정 성향의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국민의 뜻인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위원구성을 다양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
3. 서울·광주·대구지방검찰청을 제외하고는 특수부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인구 및 검찰청 규모, 권력형 비리사건의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 할 것 1
4. 조국 전 장관 본인과 가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있는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하여 증거와 진실에 기초하여 수사를 철저히 할 것 2
5. 검찰 본연의 임무는 기소권이므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축소되는 직접수사 관련 인력을 공판부에 재배치하는 등 공판부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2
6. 현행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오피스텔의 소유자 아닌 임차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가 없으므로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집 요건을 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 2
7.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별도의 절차 없이 소환해서 조사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소환하여 조사함에 따라 호송업무에 많은 수의 교정공무원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3
8. 교정시설 과밀수용으로 인하여 수용자의 국가배상청구, 자살·자해 및 교정공무원의 자살·과로사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불구속기소, 보석·집행유예·가석방 등의 확대 및 교정본부의 교정청 독립 등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검토할 것 3
9. 연구용역 과제수행이 한국형사소송법학회의 회원 등에 집중되는 것은 중립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연구용역 수행자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4
10. 특정한 정치적 편향성을 띠는 듯한 발언을 수차례 한 검찰개혁단장이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한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4
11. 국회는 국회법과 국회증감법에 따라 국가기관에 자료요구를 하고 있는데, 검찰에 대해서만 직접 자료요구를 할 수 없고 법무부를 거쳐야만 자료요구가 가능하도록 운영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4
12. 검찰 옴부즈맨 제도는 부패방지법에 따른 옴부즈맨제도와 유사한 측면이 있어 기존 제도를 활용하면 충분하므로 별도의 제도 신설은 신중할 것 ·	5
13. 검찰청 예산 독립 편성 · 심사의 구체적 방안을 검토할 것	5
14. 영장청구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5
15. 성인 보호관찰 담당인력 부족과 소년원 과밀수용 문제는 심각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그 시행계획과 결과를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고할 것	6
16. 교정본부가 시범실시 중인 외부 책 반입 금지는 수용자의 교정 및 교화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6
17. 최근 전 세계적으로 ISDS(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투자자 국가간 분쟁해결)를 개선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동 제도가 상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부작용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동 제도의 개정 및 폐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것	7
18.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의 재범 건수가 늘어나고 있고,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일대일 보호관찰제도 확대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인력충원 등의 방안을 모색할 것	7
19. 일반 중·고등학생의 한 끼 급식비인 5,411원과 비교해보면 소년원생들의 급식비 한 끼 1,800원은 지나치게 열악하므로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7
20. 최근 마약관련 압수수색 건수 및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마약담당 수사인력 확보 등 대책을 강구할 것 ···	8

21. 최근 성폭력, 인신매매 등 강력범죄가 빈번히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공소 시효가 도과하여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소시효 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할 것 8
22. 보호관찰 업무를 포함한 범죄예방정책국의 업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범죄예방정책국을 본부로 승격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8
23. 사면심사위원회를 포함하여 법무부 산하의 34개 위원회의 위원명단 및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위원회 상호간 기능 중복 여부를 검토할 것 8
24. 변호사시험 출신 검사에 대한 직무와 소양교육이 더욱 중요해졌으므로 직무, 윤리 및 인문학 등 사람과 조직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할 것 9

(대검찰청 : 20건)

1. 검찰총장이 국정감사 외에 국회 회의에 출석하는 방안, 법무부를 경유하지 않고 국회에 곧바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10
2. 검찰의 법조비리 근절 및 내부청렴 강화를 위하여 마련된 구두변론 관리 대장의 작성 및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할 것 10
3. 검찰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하여 피의사실공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10
4.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위하여 수사 담당 검사와 기소 담당 검사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1
5. 대검찰청의 과다 인원 과건 문제 및 존속기간이 경과하여 유지되고 있는 국제협력단, 검찰미래기획단 등 임시조직의 문제를 해결할 것 11
6. 검찰청 조달계약시 제한경쟁과 수의계약을 자제하고 대기업과의 계약을 최소화할 것 11
7.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을 인정하는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따라 검사와 수사관들이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2

8. 평검사에 대한 인사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검찰총장이 하는 방안, 검찰청이 예산 편성·제출을 법무부와 독립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3
9. 2016년에 구성된 바람직한 조직문화 조성 TF의 논의내용에 따라 검찰청 조직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13
10. DNA 채취시 관련 법률에서 원칙적으로 영장에 따라 채취하도록 규정한 취지에 따르도록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할 것 14
11. 영상녹화조사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사건관계인이 영상녹화를 요청하는 경우 필요적으로 영상녹화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14
12. 구속이 수사상의 필요보다 처벌효과를 주기 위하여 많이 활용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구속영장 청구제도의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15
13. 피의자 방어권 확보를 위하여 피의자가 수사를 받을 때 자기진술을 기록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15
14. 검찰 내부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범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성범죄 관련 검찰 업무에 대한 외부 감독을 두는 방안을 마련할 것 15
15. 아동학대사건 관리회의에 매년 4,500만원 수준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인력운영의 적정성과 예산의 효과성 등을 분석하여 개선 및 폐지 여부 등을 검토할 것 16
16. 미결수용자를 검사실로 소환하여 조사하는 방식 대신 검사가 직접 교정 시설을 방문하거나 원격화상조사실을 이용하여 수용자를 조사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7
17. 법무부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검찰청이 추진하는 인권보호 정책 및 제도 등을 점검·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인권보호상황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해당 제도를 재정비할 것 17
18. 검사가 직접 청구한 구속영장의 기각률이 증가하는 문제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17
19. 미제사건의 증가에 따른 부실수사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18
20. 법무부는 검찰 내 비공개 예규·훈령 점검을 통해, 관련 규정들을 정비 하고 공개할 것은 공개하도록 할 것 18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
 검찰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 인천
 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춘천지방검찰청 : 26건)

1.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전관예우 개선책을 마련할 것 19
2. 환경부 산하 임원들에 대한 사표 강요 사건 관련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하여 재기수사 등 여부를 검토할 것 19
3. 버닝썬 관련 사건을 철저히 수사할 것 19
4. 검찰의 이의제기 절차 지침에서는 검사가 이의 제기를 하더라도 상급자가
 지시하면 무조건 따르도록 하고, 외부에도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규정자체도 비공개로 하고 있어 사실상 이의제기금지 지침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 19
5. 당초에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적인 사항에 대하여 수사를 계속하거나 개시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 .. 20
6. 피의사실공표금지 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기반한 것으로서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에는 예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지침인 수사공보
 준칙에서 처벌 예외사유를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에 대하여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20
7. 서울고등법원 청사의 일부를 검찰이 부장검사실, 검사실, 기타 서류 열람·
 등사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은 피의자와의 관계에 비추어보면 부적절하므로
 이를 시정할 것 20
8.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영장발부 여부 결정시 변호인들에게 문자메시지로
 통지하는 제도의 미비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0
9. 우리들병원 관련 산업은행 특혜 대출 의혹사건의 검찰 송치 이후 일체의
 추가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업무 담당자에 대한 내부
 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 21
10. 검찰의 빈번한 공소장 변경은 지나친 기소편의주의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으므로 이를 지양할 것 21
11.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을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 21
12. 최근 언론보도에서 무분별하게 피의사실 공표가 행하여지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대책을 마련할 것 21

13. 검찰의 직접수사 및 중앙지검의 규모를 축소할 것 22
14.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압수수색 당일 조국 전 장관과 수사검사의 통화사실이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내부조사를 실시할 것 22
15. 국회의원들의 재판청탁 의혹사건을 조속히 수사할 것 22
16.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고용세습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 22
17.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낙하산 사건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 22
18.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 관련 남부구치소의 금품·향응 사건이 입건유예 되었는데,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라는 의혹이 있으므로 내부적으로 검토할 것 22
19. 지난 4월에 발생한 패스트트랙 관련 사건이 서울남부지검에 송치 되었으므로 이에 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것 23
20. 서울남부지검 관내에 발생한 갭 투자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 23
21. 바른미래당 여론조사 조작 의혹 관련 사건을 철저히 수사할 것 23
22. 수사과정의 적법성 확보와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도입된 영상녹화조사 제도의 실적 제고방안을 강구할 것 23
23. 벌금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납부명령, 납부독촉, 강제집행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24
24. 재벌 및 정치인 자녀의 마약사건과 다른 마약사건을 일관성 있게 수사할 것 24
25. 최근 5년간 92건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 43건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데, 자체감사를 통해서 필요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것 24
26.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인력 확충, 전문성 강화 등 수사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25

(대전고등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 : 20건)

1. 위법한 집회와 시위로부터 공공의 안녕질서를 수호할 수 있도록 공공수사 사건에 철저하게 대응할 것 26
2. 현재 항소심단계에 있는 유성기업 노조 관련 공판 사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 26
3. 2020년 4월에는 총선이 있으므로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지 않도록 유념하고,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히 수사할 것 26
4. 오코스모스 사건에서 다수의 피해자 및 피해액이 발생하였음에도 10년 동안 지연된 것은 관련 공무원의 뇌물수수 때문이라는 의혹이 있으므로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할 것 26
5. 조달청 비리수사에 대해 대전지검이 직접 수사할 것 26
6. 시민단체 경실련에서 한국은행 통합별관 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예정 가격 초과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해 수백억 원의 혈세를 낭비한 조달청 관계자들을 업무상 배임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고 현재 대전 지검에서 이첩된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 26
7. 검사 1인당 처리 건수는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제사건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27
8. 아동학대범죄에 관하여는 철저한 수사와 피해아동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 27
9. 집시법 위반사건의 불기소율이 100%이므로 안이하게 수사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검토할 것 28
10. 영상녹화조사 실적이 저조하므로 영상녹화조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28
11. 태양광 사업은 주로 농지를 가진 지역에서 투기와 비리를 불러오는 가운데 전남과 전북에서 농민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내부조사를 검토할 것 29
12. 광주지검은 정원 대비 결원 비율이 높아 검사 1명당 사건처리 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29
13. 조직폭력은 단체 규명하는 것도 어렵고 특히 예방을 잘 해야만 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으므로 조직폭력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 29

14. 황제노역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대주그룹의 허재호 회장에 대하여 광주지검에서 두 차례 무혐의처분한 부분은 '봐주기 의혹'이 있으므로 관련 사건을 점검할 것 30
15. 광주 시민단체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비리 의혹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 30
16. 당초에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무죄가 선고되면 추가 수사를 개시하는 방식은 지양할 것 30
17. 가정폭력의 경우 가해자 조사 없이도 바로 임시조치를 신청하거나 사건이 중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직접 전과사실 등을 확인해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31
18. 법사랑 전주지역연합회 간부가 피의자인 사건에서 대부분 무혐의처분되고, 1,100만원에 대해서만 별건으로 약식기소한 것은 유착 관계가 의심되므로 이 사건을 점검할 것 31
19. 5·18 진상 규명을 위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 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 31
20. 자유형 미집행자 집행율이 낮고, 2018년에도 자유형미집행자 미처리 건수가 32건에 달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31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법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 부산지방법검찰청, 울산지방법검찰청, 창원지방법검찰청 : 15건)

1.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여나가고 특수부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 32
2. 검찰 내에 수평적 문화가 조성되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32
3. 영남공고 사건에서 허 이사장의 변론을 맡은 사람이 권순탁 전 대구지법 서부지원장인데, 전관예우 의혹이 있는 만큼 재수사를 검토할 것 33
4. '조희팔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를 종결하지 말고 조희팔의 사망 여부와 특히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을 지속할 것 33
5. 최근 4년간 대구, 부산, 울산, 창원지방법원의 형사보상 인용 건수가 전국 18개 지방법원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구지방법원은 꾸준히 높은 인용건수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검찰은 수사에 더욱 신중을 기할 것 33

6.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관 입건이나 수사시 경찰관의 의견도 충분히 고려할 것 34
7.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검찰 공안부의 업무 축소 등으로 인해 공안수사가 약화되었다는 우려가 있는데, 공안수사도 필요하고 중요하다라는 점에서 업무분장 등에 걱정하게 고려할 것 34
8. 지역 토착비리 문제,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의 기소율 저조 문제, 채용 비리에 대한 수사부진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35
9.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대근 사상구청장,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 박○○에 대한 수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되도록 할 것 .. 35
10. 기업에 대한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지만, 기업 활동에 대한 방해로 비춰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 36
11.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검찰개혁과 함께 끊임 없는 자정노력을 할 것 36
12. 검사 1인당 사건 처리 건수가 대체로 평균 이상이므로 과중한 업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36
13. 피의사실 공표행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필요하나,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법리 또는 입건 경위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할 것 ... 37
14. 창원 SM사건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1년 7개월째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수사인력 추가 투입 등을 통해서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할 것 37
15.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는 더욱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할 것 37

(대한법률구조공단 : 2건)

1. 공단 이사장과 소속 변호사들 간 진행중인 소송에서 이사장 소송비용을 공단이 국가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38
2. 변호사 1인당 사건처리 건수가 705건에 이르는 등 공단의 업무 과부하로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므로 법무부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38

1. 2019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법무부)

구분	시정 · 처리요구사항	시정 · 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법무부 본 부	1. 집중관리 검사 명단을 작성하여 집중감찰을 하고, 이를 검사 적격 심사 및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일종의 검사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것이어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므로 법무부는 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부는 실질적인 검사 복무관리를 위해 '12년 제정한 「집중관리대상 검사의 선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 집중관리대상 검사를 선정하였고, 수집한 자료를 인사 및 복무 관리에 활용하였음 ○ 「검사복무평정규칙」 개정으로 검사에 대한 다면평가가 법제화되었고, 내부 감찰 제보시스템·언론 등 검사의 복무 상황 관리 및 평가 자료가 다양화되었으며, 매년 검사적격심사를 강화하고 있는 등 집중관리대상 검사 제도의 효용이 낮아진 점을 고려하여 2019. 2. 28. 폐지하였고,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관리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2.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위원구성이 특정 성향의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국민의 뜻인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을 다양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법무·검찰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개혁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여 구성됨 -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다양한 법무행정 분야의 전문가들을 추가 위촉할 예정임
	3. 서울·광주·대구지방 검찰청을 제외하고는 특수부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방침에 따라 '19. 10.경 전국 검찰청 특별수사부 명칭을 폐지하고, 서울중앙·광주·대구지검의 특수부를 반부패수사부로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및 검찰청 규모, 권력형 비리사건의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 할 것</p>	<p>전환함</p> <p>○ 법무부는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휘·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조직개편에 따른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인구 및 사건 규모, 지역특성과 전문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새로운 수사환경에 부합하도록 개편해 나가겠음</p>
	<p>4. 조국 전 장관 본인과 가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있는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하여 증거와 진실에 기초하여 수사를 철저히 할 것</p>	<p>○ 검찰은 관련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조국 전 장관 등 관련자들에 대하여 기소하였음</p> <p>○ 현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서 전담 공판팀을 구성하여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p>
	<p>5. 검찰 본연의 임무는 기소권이므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축소되는 직접수사 관련 인력을 공판부에 재배치하는 등 공판부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p>	<p>○ 법무부는 '20. 1. 직제개편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부서 13개를 축소·조정하는 한편, 공판부를 10개(1개 팀 포함) 확대하였음</p> <p>○ 직접수사부서의 인력을 공판부로 재배치하는 등 검찰의 공소유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p>
	<p>6. 현행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오피스텔의 소유자 아닌 임차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가 없으므로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집 요건을 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p>	<p>○ 집합건물법 개정 추진(의원입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법상 임차인에게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부여한 사항에 대해 소집권한까지 부여하는 내용으로 법안 마련 완료 • 의원실과 협의하여 발의 준비 중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7.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별도의 절차 없이 소환해서 조사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소환하여 조사함에 따라 호송업무에 많은 수의 교정공무원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p>	<p>○ 구속 피의자 등의 검찰 소환조사 시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 훈령) 제356조 규정 등에 따라 교도관이 호송업무를 담당하고 있음</p> <p>※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p> <p>제356조(근무자의 직무) ① 출정근무자는 수용자를 구치감, 법정, 검사 조사실 등 지정된 장소에 동행하고 출정 수용자의 안전 및 질서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p> <p>② 근무자는 수용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 및 소송 진행에 협력하여야 한다.</p> <p>○ 향후 교정업무 부담 등을 고려하여 교정시설 출장조사·화상조사 활용 및 반복조사 자제 등 수용자 검찰소환 조사방식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임</p>
	<p>8. 교정시설 과밀수용으로 인하여 수용자의 국가배상청구, 자살·자해 및 교정공무원의 자살·과로사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불구속기소, 보석·집행유예·가석방 등의 확대 및 교정본부의 교정청 독립 등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검토할 것</p>	<p>○ 불구속기소, 보석·집행유예 등의 확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 예정임</p> <p>○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신축, 증축 및 개·보수 등을 통한 교정시설 확충을 지속 추진하고,</p> <p>○ 모범수형자, 사회적 약자(환자, 장애인, 고령자 등), 생계형사범에 대한 심사기준 완화 등 가석방 점진적 확대 지속 추진 예정임</p> <p>○ 교정행정 분야의 전문성·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교정청 독립에 공감하며 중장기과제를 목표로 검토·추진하겠음</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9. 연구용역 과제수행이 한국형사소송법학회의 회원 등에 집중되는 것은 중립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연구용역 수행자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외부위원들이 참여하는 대검찰청 정책연구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있음 ○ 관련 주제에 대한 전문성, 실무 경험, 정책연구 수행 경력(중복 여부) 등을 고려한 엄격한 심사로, 연구자 선정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음
	<p>10. 특정한 정치적 편향성을 띄는 듯한 발언을 수차례 한 검찰개혁 단장이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한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는 2020. 1. 15. 퇴임하였음
	<p>11. 국회는 국회법과 국회증감법에 따라 국가기관에 자료요구를 하고 있는데, 검찰에 대해서만 직접 자료요구를 할 수 없고 법무부를 거쳐야만 자료요구가 가능하도록 운영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부장관을 검찰행정의 최고 감독자로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법의 취지, 법무부장관이 검찰 사무 전반을 감독하면서 정치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검찰총장을 국회 출석 요구 대상에 규정하지 않은 정부조직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됨 ○ 법무부를 통한 자료 제출 방식을 유지하더라도 국회의 검찰 관련 자료 요구에 대한 제출을 보다 신속하고,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2. 검찰 옴부즈맨 제도는 부패방지법에 따른 옴부즈맨제도와 유사한 측면이 있어 기존 제도를 활용하면 충분하므로 별도의 제도 신설은 신중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찰 옴부즈맨 제도 도입 여부는 검찰의 준사법적 행위의 특수성과 고유의 사법적 구제절차가 존재하는 현행 체계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찰은 2003년부터 ‘검찰시민 옴부즈만’ 제도를 자체적으로 시행 중으로, 국민의 인권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음
	13. 검찰청 예산 독립 편성·심사의 구체적 방안을 검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찰 예산을 분리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과 논의가 있었으나, 국가재정법 해석을 통해서는 검찰 예산의 분리 편성 취지가 명확하지 않아 오랫동안 법무부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음 ○ 또한, 법무부에서 검찰 예산을 편성해 왔던 이유 중 하나는 검찰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취지였음 ○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등 입법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므로, 향후 국회의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음
	14. 영장청구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찰은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건에 한하여 신중히 영장을 청구하고 있으며, 특히 2019. 6. 불구속 수사 및 비례성의 원칙 등을 반영한 구속수사의 일반원칙과 기준을 정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 수립된 기준을 준수하고, 수사상 필요성과 인권보장 필요성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5. 성인 보호관찰 담당 인력 부족과 소년원 과밀수용 문제는 심각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그 시행 계획과 결과를 법제 사법위원회에 보고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에 성인보호관찰 전담인력 52명을 확보하여 보호관찰소에 정원 배정을 완료하였음 ○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성인보호관찰 담당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생활밀접형 사범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보호관찰 업무를 효율화하겠음 ○ 소년원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심사원 신설과 소년원 리모델링을 추진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북부소년분류심사원 신설('25.), 부산·안양소년원 생활관 리모델링('20.~'21.), 춘천소년원 재건축('20.~'23.) 등 시설개선 사업 추진
	<p>16. 교정본부가 시범실시 중인 외부 책 반입 금지는 수용자의 교정 및 교화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자 우송·차입도서 합리화 방안과 관련하여 '19년 9월부터 10월까지 6개 교정시설에서 시범실시한 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19년 11월 11일 전국 교정기관에 확대 실시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울러, 우송·차입도서 반입 제한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폭넓은 예외사유를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리구제에 필요한 법률도서 • 외국인 수용자를 위한 외국어 도서 • 시각장애인 수용자를 위한 도서 • 소장이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종교서적, 수험서 등) ※ 유해간행물을 제외한 모든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도서는 자비로 구매가 가능하며, 경제적 이유로 구매가 곤란한 수용자의 경우 교정기관 내 비치도서 이용, 우송·차입 예외사유 적용 등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음</p>
	<p>17. 최근 전 세계적으로 ISDS(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투자자 국가간 분쟁 해결)를 개선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동 제도가 상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부작용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동 제도의 개정 및 폐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것</p>	<p>○ ISDS 제도가 포함된 자유무역협정(FTA), 투자보장협정(BIT)은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가 주무부처이므로 법무부가 제도 개선 및 폐지에 관하여 정부대표로 답변하기 곤란함</p> <p>○ ISDS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산업부·외교부 등 유관부처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현행 ISDS 체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연구·검토하겠음</p>
	<p>18. 전자발찌를 찬 상범죄자의 재범 건수가 늘어나고 있고,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일대일 보호관찰제도 확대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인력충원 등의 방안을 모색할 것</p>	<p>○ 1:1 전자감독 확대에 필요한 전담 인력 88명*의 확충을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 요청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음</p> <p>* 아동성범죄 횡수 3회 이상이고 정신질환 전력이 있는 전자감독 대상자 194명 관리를 위한 최소 필요인력 88명</p>
	<p>19. 일반 중·고등학생의 한 끼 급식비인 5,411원과 비교해보면 소년원생들의 급식비 한 끼</p>	<p>○ 소년원 급식비가 최근 5년간 연평균 2% 상승하는 데 그쳤으나, 국회 법사위 지원에 힘입어 올해는 전년 대비 5% 인상되었음 (한끼 1,893원)</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800원은 지나치게 열약하므로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같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6호 처분 시설 수준인 한끼 2,496원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 지속 협의하겠음
	20. 최근 마약관련 압수 수색 건수 및 마약 사범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마약 담당 수사인력 확보 등 대책을 강구할 것	○ 마약류범죄 폭증에 대한 통제역량 강화를 위해 검찰 수사인력 증원이 필요한 상황임 ○ 마약류밀수 등 공급사범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한 수사인력 증원 문제를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음
	21. 최근 성폭력, 인신 매매 등 강력범죄가 빈번히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가 도과하여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소시효 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할 것	○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에 대하여 적절한 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지적에 공감함 ○ 형사사법체계의 통일성, 관련 입법상황, 형평의 원칙, 법적 안정성, 헌법재판소 판례 등을 종합하여 관련 논의를 검토·지원하겠음
	22. 보호관찰 업무를 포함한 범죄예방정책국의 업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범죄예방정책국을 본부로 승격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범죄예방정책국의 ‘본부’ 승격을 추진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본부’ 승격의 전단계인 ‘실(室)’ 승격을 추진하겠음
	23. 사면심사위원회를 포함하여 법무부 산하의 34개 위원회의 위원명단 및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위원회	○ 위원 명단, 회의록 공개 - 위원명단은 7개 위원회(사면심사위원회, 법교육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가석방심사위원회, 법무부정책위원회,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이민정책자문위원회)가 공개 중이고,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상호간 기능 중복 여부를 검토할 것	<p>회의록은 3개 위원회(사면심사위원회, 가석방심사위원회, 법교육위원회)가 공개 중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외 위원회의 경우 위원명단 공개 시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고, 신변 안전 위협,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회의록 공개 시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곤란하고, 관계인의 신상 정보가 노출되어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커 비공개하고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향후 시정요구사항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비공개 사유의 타당성을 점검하겠음 <p>○ 위원회 상호간 기능 중복 여부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기능 및 운영실적 등을 지속 검토하여 중복적 성격의 위원회에 대해서는 통폐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
	24. 변호사시험 출신 검사에 대한 직무와 소양 교육이 더욱 중요해졌으므로 직무, 윤리 및 인문학 등 사람과 조직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할 것	<p>○ 법무연수원의 신임검사 교육과정에서 매월 1~2회 ‘인문학 토론 강의’ 등을 통하여 역사, 철학, 문화의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고 있음</p> <p>○ 또한 검사 직무 윤리 및 합리적 소통 방식·교육을 위해 대검 검찰본부장, 일선청 간부 및 평검사 등 다양한 강사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p> <p>○ 그 외 대학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신임검사의 민주적 소양과 사회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음</p>

2. 2019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대검찰청 : 고등검찰청 포함)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대검찰청	1. 검찰총장이 국정감사 외에 국회 회의에 출석하는 방안, 법무부를 경유하지 않고 국회에 곧바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찰 수사에 대한 정치적 영향 등으로 인해 정당한 검찰권 행사가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 ○ 검찰의 국회에 대한 자료제출의 경우, 준사법기관으로서 수사·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하여 그동안 법무부를 통해 이루어져 왔음 ○ 이상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개선방안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해 나가겠음
	2. 검찰의 법조비리 근절 및 내부청렴 강화를 위하여 마련된 구두변론 관리대장의 작성 및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두변론 관리대장을 전산화하여 변호인의 변론 내역을 형사사법공동시스템(KICS)에 입력·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음
	3. 검찰 수사과정에서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피의사실공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의사실공포를 방지하기 위해 2019. 10.부터 수사담당자가 아닌 별도의 전문공보관이 공보업무를 전담하는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폐지하였음 ○ 사건관계인의 명예훼손과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한편, 정제된 공보를 통해 언론의 비판과 감시 기능을 보장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실질적인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2019. 12. 시행된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피의사실공표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p>
	<p>4.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위하여 수사 담당 검사와 기소 담당 검사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p>	<p>○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의 기본 취지를 살리면서 검사 직무수행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p>
	<p>5. 대검찰청의 과다 인원 파견 문제 및 존속 기간이 경과하여 유지되고 있는 국제협력단, 검찰미래기획단 등 임시조직의 문제를 해결할 것</p>	<p>○ 비직제로 운영되던 국제협력단, 특별감찰단은 2020. 3. 정식 직제화하고, 검찰미래기획단, 형사정책단은 2020. 2 상반기 인사 이후 운영하지 않고 있음</p> <p>○ 현재 대검찰청의 정원만으로는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어 부득이 일부 인력을 파견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바, 대검찰청 정원 현실화를 위해 증원이 필요한 상황임</p>
	<p>6. 검찰청 조달계약시 제한 경쟁과 수의계약을 자제하고 대기업과의 계약을 최소화할 것</p>	<p>○ 대검찰청은 조달계약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제한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중소기업 위주의 제한경쟁 입찰을 하고 있음</p> <p>○ 또한, 조달계약 시 동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2회 유찰인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음</p> <p>○ 계약의 특성상 다수 업체의 입찰이 어려운 사업이 포함되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제한경쟁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관련 법규정에 따라 공정한 절차에 의해 조달계약이 체결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음</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7.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을 인정하는 헌법 재판소 결정례에 따라 검사와 수사관들이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p>	<p>○ 검찰은 2019. 10.부터 자체적으로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을 시행하여, 종래 피의자 조사 시에만 변호인 참여를 허용하던 것을, 피내사자·피해자·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 조사 시 변호인 참여를 허용하였고, 변호인의 조사 참여 사전제한을 금지하였으며, 2019. 11. 12. 위 내용을 포함한 「변호인 등의 신문·조사 참여 운영지침」(대검예규)을 제정 및 시행하였음</p> <p>○ 또한 위 대검예규의 주요 규정을 법무부령으로 상향하여 규범력을 높이고 그 밖에 변호인의 변론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2020. 1. 31. 「검찰사건사무규칙」(법무부령)을 개정하여 공포 및 시행하였음</p> <p>※ 관련 「검찰사건사무규칙」개정 내용</p> <p>① 조사 시 변호인의 참여권을 피 혐 의 자 · 피 내 사 자 · 피 해 자 ·참고인 조사까지 확대 ② 변호인이 검사를 상대로 방문 등을 통해 직접 변론할 수 있도록 변론기회 보장 의무 신설 ③ 변호인 참여 신청 시 구두에 의한 신청도 가능하도록 신청방법을 확대 ④ 피의자 출석 요구 시 피의자의 변호인 에게도 통지 의무화 ⑤ 변호인 요청 시 검사에게 출석일시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 신설</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8. 평검사에 대한 인사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검찰총장이 하는 방안, 검찰청이 예산 편성·제출을 법무부와 독립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p>	<p>○ 검사 인사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의 임명과 보직에 관하여 검찰 인사위원회 심의와 검찰총장 추천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 검사 임용권의 일부를 검찰총장에게 재위임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음 - 검사 인사에 관한 검찰총장의 의견을 적절하게 개선하는 등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p>○ 검찰청 예산 편성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찰 예산을 분리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과 논의가 있었으나, 국가재정법 해석을 통해서도 검찰 예산의 분리 편성 취지가 명확하지 않아 오랫동안 법무부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음 - 또한, 법무부에서 검찰 예산을 편성해 왔던 이유 중 하나는 검찰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취지였음 -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등 입법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므로, 향후 국회의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음
	<p>9. 2016년에 구성된 바람직한 조직문화 조성 TF의 논의내용에 따라 검찰청 조직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p>	<p>○ 「검사윤리강령」(법무부훈령)을 개정하여 ‘하급자에 대한 존중 및 업무와 관련 없는 지시의 금지 규정’ 등을 신설하고,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 및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을 제정하여 시행 중임</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0. DNA 채취시 관련 법률에서 원칙적으로 영장에 따라 채취하도록 규정한 취지에 따르도록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할 것</p> <p>11. 영상녹화조사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사건관계인이 영상녹화를 요청하는 경우 필요적으로 영상녹화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p>	<p>○ 검찰 조직문화를 수평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p> <p>○ 2020. 1. 「디엔에이법」 및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지침」을 개정하였으며, 동의에 의한 채취뿐만 아니라 영장에 의한 채취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디엔에이 채취 절차의 적법성을 강화하였음</p> <p>○ 향후에도 관련 규정을 엄수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적법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p> <p>○ 「영상녹화업무처리지침」(대검예규)에 필요적 영상녹화 대상사건과 영상녹화 권장 대상사건을 각 특정하여 영상녹화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사건관계인이 영상녹화조사를 요청한 사건’을 영상녹화 권장 대상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음</p> <p>○ 다만 대질신문 과정에서 일부 사건관계인이 영상녹화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수사현장에서 검사의 판단에 따라 영상녹화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p> <p>○ 형사소송법상 영상녹화조사는 수사기관의 재량으로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p> <p>○ 사건관계인이 요청하는 경우 가능한 영상녹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상녹화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임</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법개정을 통하여 영상녹화물에 증거능력을 부여할 경우, 영상 녹화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p>
	<p>12. 구속이 수사상의 필요보다 처벌효과를 주기 위하여 많이 활용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구속영장 청구제도의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p>	<p>○ 구속영장 청구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영장청구 실태를 수시 점검하고, 검찰 시민위원회,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을 적극 활용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음</p>
	<p>13. 피의자 방어권 확보를 위하여 피의자가 수사를 받을 때 자기진술을 기록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p>	<p>○ 검찰은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자기진술 기록 보장을 위해 2019. 6. ‘메모용 의자’ 및 ‘메모지’를 전국청 수사실에 각 1개씩 비치하였음. 2020. 4.까지 각 2개씩 추가 확대 비치하고(수사실별로 총 3개 비치), 향후 전국청 대상 ‘메모용 의자’ 및 ‘메모지’ 활용실태를 점검하고, 자기진술 기록에 관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임</p> <p>○ 한편, 「검찰사건사무규칙」(법무부령)을 개정하여 피의자와 참여 변호인이 조사 시 조사내용을 제한 없이 메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음('20. 1. 31. 공포·시행)</p>
	<p>14. 검찰 내부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범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성범죄 관련 검찰 업무에 대한 외부 감독을 두는 방안을 마련할 것</p>	<p>○ 검찰은 2004년부터 외부위원 위주로 구성된 감찰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2010년부터 외부인사를 감찰부장으로 임용하여 왔으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한 특임검사 제도를 신설하는 등 내부 온정주의를 차단하고</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5. 아동학대사건 관리 회의에 매년 4,500만 원 수준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인력 운영의 적정성과 예산의 효과성 등을 분석하여 개선 및 폐지 여부 등을 검토할 것</p>	<p>감찰의 신뢰성·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내부의 성희롱·성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15년 성폭속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을 강화하고, 성희롱 징계 양정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2018. 1. 대검 검찰부 내 여성동향팀을 신설하였고, 2018. 7. 「양성평등담당관 설치 및 운영규정」, 2018. 10. 「대검 성희롱·성폭력·성차별 행위 예방지침」을 각 제정하여 익명 설문조사 및 성비위 예방교육을 정례화하고, 성비위 신고 및 조사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지속적·적극적 조치를 취하여 왔음 ○ 향후에도 성비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등 제반 측면을 고려하여 성비위 관련 감찰업무의 신뢰성·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외부감독 시스템의 설치 필요성 및 세부 운용방안을 검토하겠음 ○ '19년 사건관리회의 예산은 3,800만 원이며 총 87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예산 중 98%가 집행된 만큼 일선청에서 활용도가 높음 ○ 현재도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상시가 아닌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각 사안에 적절한 관계자들을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있음 ○ 적절한 회의 개최를 위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독려하겠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6. 미결수용자를 검사실로 소환하여 조사하는 방식 대신 검사가 직접 교정시설을 방문하거나 원격화상조사실을 이용하여 수용자를 조사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금된 피의자·피고인을 불필요하게 자주 소환하는 등의 인권침해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음 ○ 2020. 2.~3.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 등을 위해 미결수용자의 소환을 자제할 것을 각급 검찰청에 지시하였으며, 향후에도 미결수용자 소환 조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불필요한 소환 자제, 조사시간 단축, 심야조사 억제 등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음
	<p>17. 법무부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검찰청이 추진하는 인권보호 정책 및 제도 등을 점검·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인권보호 상황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해당 제도를 재정비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에는 법무부가 일선청으로부터 인권보호 상황보고를 직접 취합하여 이를 평가하였으나, 2019년 대검 인권부 신설 이후 소관 부서인 대검 인권부가 일선청으로부터 인권보호 상황보고를 받아 이를 점검한 후 법무부에 전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 일선청의 인권보호 상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각종 취약점 등 문제 발견 시 직접 해당 청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인권 관련 제도개선 등에 활용하고 있음 ○ 향후에도 인권보호 상황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재정비 노력을 기울일 예정임
	<p>18. 검사가 직접 청구한 구속영장의 기각률이 증가하는 문제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사소송 절차의 실효성 및 형벌 집행의 담보 등 필요한 경우에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불구속 수사 원칙을 준수하고 있음 ○ 또한 부장검사회의, 공소심의위원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인권수사자문관 자문제도,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검찰시민위원회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검사 직접 구속 영장 청구의 타당성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음</p> <p>○ 향후 구속의 필요성 여부를 보다 엄격히 판단하여 신중하게 구속 영장을 청구하도록 노력하겠음</p>
	<p>19. 미제사건의 증거에 따른 부실수사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p>	<p>○ 경험이 풍부한 고경력 검사들을 형사부에 배치하여 복잡한 주요 사건을 처리하게 하는 등 신속하고 충실한 수사를 위해 노력중임</p> <p>○ 항고사건의 고등검찰청 직접경정 확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적극 활용 등을 통해 형사부 검사들의 업무를 합리적으로 분담함으로써 형사부의 과중한 업무량을 경감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 중임</p> <p>○ 향후 지속적으로 민생사건 수사 인력을 충원하고 고소·고발사건 수사절차 개선·효율화를 도모하는 등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보다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사하겠음</p>
	<p>20. 법무부는 검찰 내 비공개 예규·훈령 점검을 통해,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고 공개할 것은 공개하도록 할 것</p>	<p>○ 검찰 예규·훈령을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하면서 비공개 유지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고,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경우 등에는 공개를 적극 검토하겠음</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서울고검 서울중앙 서울동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서울서부	1.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전관예우 개선책을 마련할 것	○ 법무부에서는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를 구성하여(2019. 11.) 전관예우 개선책 마련 검토 중임 ○ 향후 법무부의 전관예우 개선책 마련 시 적극 시행 예정임 (서울고등검찰청)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2. 환경부 산하 임원들에 대한 사표 강요 사건 관련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하여 재기수사 등 여부를 검토할 것	○ 현재 항고사건 수사 중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법리 및 사실관계 검토하여 처리 예정임 (서울고등검찰청)
	3. 버닝썬 관련 사건을 철저히 수사할 것	○ 관련된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여 ‘경찰총장’으로 언급되었던 윤모 총경 및 브로커 등 주요 피의자를 구속기소하고, 다수 피의자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음 ○ 향후 관련 사건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고,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는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4. 검찰의 이의제기 절차 지침에서는 검사가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상급자가 지시하면 무조건 따르도록 하고, 외부에도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규정자체도 비공개로 하고 있어 사실상 이의제기금지 지침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	○ 법무부와 대검찰청에서도 현행 이의제기 절차의 미비점 및 개선방안을 지속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검찰 업무 과정에서 이건의 해소를 위하여 충분히 논의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반절차 개선에도 노력하겠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p> <p>5. 당초에 기소된 범죄 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사항에 대하여 수사를 계속 하거나 개시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p> <p>6. 피의사실공표금지 무죄추정의 원칙에 기반한 것으로서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 공표죄에는 예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지침인 수사 공보준칙에서 처벌 예외사유를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p> <p>7. 서울고등법원 청사의 일부를 검찰이 부장 검사실, 검사실, 기타 서류 열람·등사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은 피의자와의 관계에 비추어보면 부적절하므로 이를 시정할 것</p> <p>8.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영장발부 여부 결정시 변호인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통지하는</p>	<p>○ 무죄 평정을 더욱 엄격하게 실시하여 수사 및 공소유지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를 엄정하게 평가하는 등 검찰권 행사가 적법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음 (서울중앙지방검찰청)</p> <p>○ 2019. 12. 공보 업무만을 전담하는 전문공보관(고검검사급)을 파견받아 운영 중이고, 2019. 12.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위 규정 시행 이후 2020. 3. 6.까지 사건공보 관련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총 4회 개최하는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서울중앙지방검찰청)</p> <p>○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 관리 주체인 서울고등검찰청과 협의하여 면밀히 검토하겠음 (서울중앙지방검찰청)</p> <p>○ 실효성 있는 자동 통지 제도 운영을 위해, 변호인 선임계 등 제출시 문자 메시지 수신이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줄 것을 변호사회에 요청</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제도의 미비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하는 한편, 변호인 휴대전화번호 등 관련 정보를 시스템에 철저히 입력하여 변호인의 변론권이 더욱 보장 되도록 하였음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9. 우리들병원 관련 산업은행 특혜 대출 의혹 사건의 검찰 송치 이후 일체의 추가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업무 담당자에 대한 내부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	○ 사건 송치 후 관련자 조사, 증거 분석, 법리 검토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 엄정하게 사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음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10. 검찰의 빈번한 공소장 변경은 지나친 기소 편의주의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으므로 이를 지양할 것	○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판단을 더욱 엄격하게 하고, 적절한 공소유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11.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을 특가법상 알선 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	○ 관련자 조사, 관련사건 기록 검토 등 진행 중으로,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 엄정하게 사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음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12. 최근 언론보도에서 무분별하게 피의사실 공표가 행하여지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2019. 12. 공보 업무만을 전담하는 전문공보관(차장검사급)을 파견받아 운영 중이고, 2019. 12.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위 규정 시행 이후 2020. 3. 6.까지 사건공보 관련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총 4회 개최하는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3. 검찰의 직접수사 및 중앙지검의 규모를 축소할 것	○ 2020. 2. 중앙지검 직접수사부서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로 전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적절한 조직과 인력 운용에 노력하겠음(서울중앙지방검찰청)
	14.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압수 수색 당일 조국 전 장관과 수사검사의 통화사실이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내부 조사를 실시할 것	○ 조국 전 장관의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조국 전 장관과 수사검사의 통화내용이 어떠한 경위로 유출된 것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였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5. 국회의원들의 재판 청탁 의혹사건을 조속히 수사할 것	○ 관련자 조사, 관련사건 기록 검토 등 진행 중으로,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 엄정하게 사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6.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 기관 고용세습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	○ 무기계약직 공개채용 업무부당처리 관련 사건은 2019. 7. 감사원 수사 요청서가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첩 되어 현재 수사 중에 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17.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 하고 있는 국립공원 관리공단 이사장 낙하산 사건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	○ 공소유지 전담팀을 구성하여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서울동부지방검찰청)
	18.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 관련 남부구치소의 금품·향응 사건이 입건 유예 되었는데,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라는	○ 검토 결과,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100만 원 내외이고, 사건 발생 직후 해당 공무원들을 인사조치하여 직무 배제된 점 고려하여 통상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향후 공무원 범죄에 대해 통상의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의혹이 있으므로 내부적으로 검토할 것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19.	지난 4월에 발생한 패스트트랙 관련 사건이 서울남부지검에 송치되었으므로 이에 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것	○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여 2020. 1. 2. 37명을 기소(24명 불구속 구공판, 13명 구약식)하였고, 현재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	서울남부지검 관내에 발생한 갭 투자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	○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1.	바른미래당 여론조사 조작 의혹 관련 사건을 철저히 수사할 것	○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2. 수사과정의 적법성 확보와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도입된 영상녹화조사제도의 실적 제고방안을 강구할 것	○ 아동·청소년·장애인 조사, 외국인 조사 등의 경우 원칙적으로 영상 녹화를 실시하도록 하는 ‘영상녹화 조사 활성화 방안’을 마련·시행하고 있음 - 향후에도 수사절차 투명성 강화, 사건 관련자 인권보장을 위해 영상 녹화조사 활용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 검사들에게 적극적으로 영상녹화 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하였고, 특히 수사과 조사 시 많이 활용하도록 전파하였음 (의정부지방검찰청) ○ 2019. 10.부터 영상녹화 활성화를 권장하고, 2019. 11. 자체 ‘영상녹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으로 시행 이후 영상녹화 조사 건수가 증가하였음(2019. 7.~9. 108건 →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0.~12. 225건) (인천지방검찰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 결재과정에서 영상녹화 등 인권 친화적 조사 우수사례를 발굴·격려하고,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을 준수하여 영상녹화를 진작하는 등 자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수원지방검찰청)
	<p>23. 벌금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납부명령, 납부독촉, 강제집행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명령과 납부독촉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으로, 납부명령서·1·2차 납부독촉서·강제집행예고장 발송, 납부독촉전화 및 납부독촉문자 발송 등 벌금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강제집행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으로, 사실조회를 통하여 벌금 미납자의 사업장, 전세금, 재산 등 파악 후 신속히 강제집행을 실시하고 있음 ○ 2020. 3. ‘범죄 수익환수 TF’를 통해 은닉재산을 추적하여 그 결과가 집행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종국적이고 실질적인 범죄수익환수 업무를 수행하는 등 강제집행 및 검거활동 등으로 벌금액 집행률을 제고하겠음 (서울북부지방검찰청)
	<p>24. 재벌 및 정치인 자녀의 마약사건과 다른 마약 사건을 일관성 있게 수사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마련한 ‘공항(항만) 적발 마약류 밀수사범 신병확보 기준’에 따라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등 없이 마약 사건을 일관성 있게 수사할 예정임 (인천지방검찰청)
	<p>25. 최근 5년간 92건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지검은 2018. 3. 구상권 소제기 여부에 대한 자체 전수 조사를 통해 위 문제를 발견하여 현재 나머지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에도 불구하고 이 중 43건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데, 자체 감사를 통해서 필요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것</p>	<p>구상권 행사를 완료하였고, 결재시스템 등을 정비하여 소멸시효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계 등 조치와 관련, 구상권 행사를 해태한 업무담당자인 공익법무관은 모두 소집해제되었고, 당시 관리감독 책임자였던 형사3부장(현재는 인권감독관 소관) 4명 중 2명이 퇴직하여 문책할 수 없었음 ○ 현재 근무 중인 부장검사 2명은, ① 1명은 근무기간 중 소멸시효 도과 1건으로 경미하여, ② 나머지 1명은 자체점검으로 문제점 파악한 뒤 제도개선을 통해 전국적으로 시행되게 한 점이 참작되어 별도로 감찰 또는 징계 절차에 회부하지 않았음 <p>※ 감사원도 조치사항으로 재발방지책 마련과 담당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하였을 뿐 담당자에 대한 문책 등을 요구하지는 않았으며, 검찰에서도 그에 따라 충실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음 (인천지방검찰청)</p>
	<p>26.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 인력 확충, 전문성 강화 등 수사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크웹(Dark Web), SNS을 통한 마약거래단속 등 첨단 수사기법을 발굴·활용하고, 지능화되는 자금세탁범죄에 대응코자 범죄수익환수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수원지방검찰청)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대전고검 대전지검 청주지검 광주고검 광주지검	1. 위법한 집회와 시위로 부터 공공의 안녕질서를 수호할 수 있도록 공공수사 사건에 철저히 대응할 것	○ 검찰은 공공수사 전담검사 지정 및 선거·노동·집회 등 분야 전문성 함양, 엄정한 사건처리기준 적용을 통해 위법한 집회·시위에 대하여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임 (대전고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2. 현재 항소심단계에 있는 유성기업 노조 관련 공판 사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	○ 현재 재판 중인 유성기업 현대차 공모관련 부분(대전지법,2019노2706)과 관련, 2019. 8. 22. 1심 선고 후 쌍방 항소하여 사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 및 공소유지에 힘쓰고 있음 (대전고검)
	3. 2020년 4월에는 총선이 있으므로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지 않도록 유념하고,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히 수사할 것	○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불법 선거 운동은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해하는 행위이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여 엄단하겠음 (대전지검)
	4. 오코스모스 사건에서 다수의 피해자 및 피해액이 발생하였음에도 10년 동안 지연된 것은 관련 공무원의 뇌물수수 때문이라는 의혹이 있으므로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할 것	○ 철저히 수사하여 기소하였고, 현재 1심 재판 진행 중으로,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음 ○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사행심을 조장하여 경제적 피해를 양산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하는 경제사범들에 대하여 엄정히 대처하겠음 (대전지검)
	5. 조달청 비리수사에 대해 대전지검이 직접 수사할 것	○ 사건을 송치 받아 검찰에서 수사 중임 ○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여 처리할 예정임 (대전지검)
	6. 시민단체 경실련에서 한국은행 통합별관 공사 입찰과 관련해서 예정 가격 초과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해 수백억	○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여 처리할 예정임 ○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공공분야의 구조적 비리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원의 혈세를 낭비한 조달청 관계자들을 업무상 배임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고 현재 대전지검에서 이첩된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p>	<p>단속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엄단하겠음 (대전지검)</p>
	<p>7. 검사 1인당 처리 건수는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제사건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장검사가 배당 시부터 기록을 검토하여 수사방향을 제시하고, 경륜 있는 검사들을 형사부에 배치하여 주요사건을 처리하게 하는 등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하여 노력하겠음 (대전지검) ○ 2019. 상반기 각종 사회현안사건 수사 파견, 국외훈련 등으로 검사 인력 부족이 일시적으로 심화되어 미제 사건이 증가하였으나, 2019. 하반기부터 형사사건 미제 처리에 주력하여 장기 미제 등 대폭 감소하였고, 향후에도 사건의 신속, 적절한 처리를 통해 검찰권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2019. 12. 말 기준 전년동기 대비 총 미제사건 307건, 장기 미제사건 40건 감소 (청주지검)
	<p>8. 아동학대범죄에 관하여는 철저한 수사와 피해 아동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철저히하고 충실하게 수사하겠음 - 사안이 중하거나 죄질이 나쁜 아동학대사범을 구속 수사하는 등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엄정 대응하겠음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협력하여 아동의 특수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보호·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피해아동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음 (대전지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사건 전담검사를 지정하여, 전담검사가 초동 수사지휘부터 공소 유지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과정에서는 피해자 조사 시 신뢰관계인 및 진술조력인을 동석시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고,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되면 원칙적으로 항소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또한 피해자인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피해자 지원 조치를 취하도록 독려 중임 (청주지검)
	9. 집시법 위반사건의 불기소율이 100%이므로 안이하게 수사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검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수감기간(2017. 9. 1. ~ 2018. 8. 31.)에는 100% 불기소한 바 있으나(10명), 법리상 명백히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극히 경미한 사안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돈장 앞 도로를 막아선 경우 등 집시법위반이 되지 않거나, 30분간 신고장소를 벗어난 경우에 불과 ○ 수감기간(2018. 9. 1. ~ 2019. 8. 31.)에는 8명 중 5명을 기소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였음(청주지검)
	10. 영상녹화조사 실적이 저조하므로 영상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녹화제도의 유용성을 구성원들에게 전달, 영상녹화제도를 적극적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조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p>	<p>으로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관련 지침을 숙지하여 적정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녹화조사 적극 활용으로, 청주지검 영상녹화 실적은 2020. 1.말 기준 전년 동월 대비 20건 이상 증가하였음 (청주지검) ○ 신청사 준공 시 2개 검사실 당 영상 녹화 전자조사실 1개를 설치하였고, 검사들에게 영상녹화 적극 활용을 독려하고 있음 (전주지검)
	<p>11. 태양광 사업은 주로 농지를 가진 지역에서 투기와 비리를 불러오는 가운데 전남과 전북에서 농민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내부조사를 검토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한국전력 전북지역본부장 등 한전직원 및 공사업자 등 15명을 기소(구속 5명, 불구속 10명)하여 현재 재판 진행 중임 ○ 본건 이외에도 유사 불법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음 ○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공기업의 구조적·관행적 비리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여 엄단하겠음 (광주고검)
	<p>12. 광주지검은 정원 대비 결원 비율이 높아 검사 1명당 사건처리 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법정형 조사실’ 활성화, 서술식 조서와 녹음 녹화 등 간이한 조사방법을 활용하는 등 형사부 업무 효율화 방안을 검토·추진 중임 ○ 형사부 장기 미제 사건의 인지부서 재배당을 통해 업무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고 있음 (광주지검)
	<p>13. 조직폭력은 단체 규명하는 것도 어렵고 특히 예방을 잘 해야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폭력사범에 의한 사회불안, 민생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과 공조체제를 갖추어 체계적이고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으므로 조직 폭력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	면밀하게 관리하고 있음 ○ 적발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통해 중형 선고 되도록 하는 등 엄단하고 있음 (광주지검)
	14. 황제노역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대주 그룹의 허재호 회장에 대하여 광주지검에서 두 차례 무혐의처분한 부분은 ‘보주기 의혹’이 있으므로 관련 사건을 점검할 것	○ 허재호 회장에 대하여 두 차례 혐의없음 처분되었던 사건은, 법인세 포탈 등 국세청 고발사건으로서 법인과 대표는 기소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허재호 회장의 경우 관여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2015. 7. 혐의없음 처분하였고, 그 후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재수사한 결과도 동일하여 고검 승인을 받아 2016. 8. 재차 혐의없음 처분한 것임 ○ 그 외 관련 혐의없음 사건들 역시 항고 및 재정신청 등 절차를 거쳤음에도 원처분이 유지된 사건들로 관련 행정소송 등 점검 결과 처분이 부당하거나 재수사해야 할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음 (광주지검)
	15. 광주 시민단체가 민간 공원 특례사업 우선 협상대상자 비리 의혹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	○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고발 사건을 직접 수사, 2019. 11. ~ 2020. 1. 광주시 행정부시장, 감사위원장 등 5명(1명 구속기소, 4명 불구속기소)을 기소하여 시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현재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광주지검)
	16. 당초에 기소된 범죄 사실에 대한 무죄가 선고되면 추가 수사를 개시하는 방식은 지양할 것	○ 수사 초기부터 증거 확보하여 실제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되, 인권 보장이나 적법절차 측면에서도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청주지검)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표적·별건수사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검찰권 행사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겠음 (광주지검)
	17. 가정폭력의 경우 가해자 조사 없이도 바로 임시 조치를 신청하거나 사건이 중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직접 전과사실 등을 확인해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2019. 8.부터 ‘가정폭력범죄 등 임시 조치청구 업무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가해자 조사 미실시 등 형식적 이유로 임시조치를 기각하지 않고, 필요 시 검사가 직접 가해자 전과조회 등 조치를 취한 후 신속히 임시조치 청구토록 함 (전주지검)
	18. 법사랑 전주지역연합회 간부가 피의자인 사건에서 대부분 무혐의 처분 되고, 1,100만 원에 대해서만 별건으로 약식기소한 것은 유착 관계가 의심되므로 이 사건을 점검할 것	○ 해당 사건을 면밀히 점검한 결과, 경찰이 송치한 혐의 부분에 대하여 상당한 보완수사 필요성이 존재하여 계좌추적·관련자 조사·판례 분석 등 치밀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한 후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한 것으로 확인하였음 (전주지검)
	19. 5·18 진상 규명을 위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 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	○ 수사검사 직관 외에 2명의 검사를 투입하여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철저히 대응할 예정임 (광주지검)
	20. 자유형 미집행자 집행율이 낮고, 2018년에도 자유형 미집행자 미처리건수가 32건에 달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2019. 1.부터 ‘자유형 미집행자 집행 실적 제고 방안’을 수립·시행하는 등 자유형 미집행자 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자유형 미집행자 집행 실적 제고 방안’ 시행 후, 2019년 집행률(67.3%)은 2018년 집행률(49.2%) 대비 137% 대폭 증가하였음 ○ 향후에도 자유형 미집행자 집행을 위한 청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음 (제주지검)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대구고검 대구지검 부산고검 부산지검 울산지검 창원지검	1.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여 나가고 특수부를 폐지 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에 따라 대구지검 특수부는 반부패수사부로 명칭을 변경하여 그대로 유지되었음 ○ 다만, 2020. 2. 3.자 정기인사 시행사부·공판부 인원을 증원하고 부부장검사와 경력 검사를 다수 배치하여 형사·공판 업무를 강화하였음(대구지검)
	2. 검찰 내에 수평적 문화가 조성되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검찰청 ‘권위주의적 조직문화 개선 방안’을 기초로, 원활한 수평적 소통을 가로막는 권위주의적 조직문화에서 탈피하고 유연한 수평적 소통문화로 변모하도록 개선 중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 시 기관장 전용 또는 별도 좌석 지양, 직원들과 같은 의자로 통일하여 배치하고, 관등성명 신고 대신 기관장이 직원들 사이로 자유로이 다니면서 인사 및 덕담 - 기관장 이·취임식 시 최소인원만 현관 영접, 사무실 방문 인사 축소 - 회의 시 서열구분하는 일자형 좌석 대신 소통친화적인 ‘ㄱ’자형 좌석 배치 - 간담회 시 경직된 좌석배치도 비치 대신 자유로이 앉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참석자 프로필 작성 지양(작성 필요 시 사생활 부분 기재 지양) - 간부 위주의 형식적 조직활성화 행사에서 벗어나 부·과별 의견에 따라 자유롭게 시행 - 봉사활동 등 외부 행사 시 하급직원 위주 동원을 지양하고 기관장 및 부서장이 솔선수범해 참석하여 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직원의 공평한 참여 독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위적 용어 개선(지도방문 → 격려방문, 강화말씀 → 당부말씀, 직원신고 → 직원인사 등) (대구지검)
	<p>3. 영남공고 사건에서 허 이사장의 변론을 맡은 사람이 권순탁 전 대구지법 서부지원장인데, 전관예우 의혹이 있는 만큼 재수사를 검토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였음 - 일부 범행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고발되는 등 어려움 속에서도 나름대로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증거 확보된 사안에 대해 기소하여 재판 중임 (대구지검)
	<p>4. ‘조희팔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를 종결하지 말고 조희팔의 사망 여부와 특히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을 지속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사장 강○○ 등 76명을 기소하여 (48명 구속기소) 징역 22년(강○○) 등 중형이 확정되었고, 조희팔은 주치의 진술·모발 감정 등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향후 관련 사건이나 새로운 단서 발견 시 계속 수사할 예정임 ○ 범죄수익 환수 절차 계속 중이며, 향후에도 철저히 범죄수익 환수할 예정임 (대구지검) <p style="text-align: center;">※ 2020. 3. 13.까지 약 32억 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하였고, 약 710억 원이 법원에 공탁되어 분배 소송 진행 중임</p>
	<p>5. 최근 4년간 대구, 부산, 울산, 창원지방법원의 형사보상 인용 건수가 전국 18개 지방법원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구지방법원은 꾸준히 높은 인용건수를 보여주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4년간 대구지방법원 형사보상 인용 건수 총 970건 중 도로법위반 등 양벌규정 위헌에 따른 형사보상 인용 건수는 926건으로 전체 형사보상 인용 건수의 95.46%를 차지 ○ 구속사건 무죄 선고로 인한 형사보상 인용 건수는 총 39건으로 전체 형사보상 인용 건수의 4.02%를 차지하고 있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있으므로 검찰은 수사에 더욱 신중을 기할 것	○ 위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수사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음 (대구지검)
	6.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관 입건이나 수사시 경찰관의 의견도 충분히 고려할 것	<p>○ 공표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등에 관해 충분한 자료 및 의견을 청취하고, 공표된 피의사실의 내용, 국민들의 알권리와 무죄추정의 원칙 간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음 (부산지검)</p> <p>○ 피의사실공표죄는 구체적 사안별로 충돌하는 헌법적 가치를 조화롭게 해석하여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사안마다 개별적 판단이 필요함 (울산지검)</p> <p>-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되 입건된 경찰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도 청취하여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결론을 도출하겠음 (울산지검)</p> <p>○ 관련 사건 수사 시 공표된 피의사실의 내용, 공표 경위 등에 관하여 경찰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피의자의 인권보장 및 국민의 알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음 (창원지검)</p>
	7.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검찰 공안부의 업무 축소 등으로 인해 공안수사가 약화되었다는 우려가 있는데, 공안수사도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점에서	<p>○ 공공수사부 검사 인력을 확충하였고, 업무 분장 등에 대한 적절한 조정을 통하여 대공수사를 비롯한 공공수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으며,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음 (부산지검)</p> <p>○ 공공수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업무분장 등에 적정하게 고려할 것</p>	<p>하고 있고, 전담검사와 수사관의 역량 강화 및 적정한 업무분장을 통해 공공수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울산지검)</p> <p>○ 법무부 직제개편(2020. 2. 3.)에 따라 공공수사부가 형사4부로 개편되어 형사4부에서 기존의 공공수사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음</p> <p>- 앞으로도 형사4부를 중심으로 하여 관련 분야의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창원지검)</p>
	<p>8. 지역 토착비리 문제,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의 기소율 저조 문제, 채용비리에 대한 수사 부진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p>	<p>○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충분한 법리 검토와 면밀한 증거 판단에 기초하여 적극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음 (부산지검)</p> <p>○ 선적물량 수주 대가로 협력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대우조선해양 직원 포함 배임수증재사범 7명을 인지·기소하는 등 토착비리 척결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p> <p>- 향후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등을 엄정 수사하여 법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음 (울산지검)</p> <p>○ 지역 내 뿌리 깊고 구조적 병폐가 없는지 치밀하게 살펴 적극 대응하여 토착비리 및 부정부패 근절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창원지검)</p>
	<p>9.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대근 사상구청장,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박○○에 대한 수사가 신속하고</p>	<p>○ 피의자들 및 관련자 조사 완료하여 2020. 3. 9. 피의자들 모두 불구속 구공판하였고, 향후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임 (부산지검)</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정확하게 진행되도록 할 것	
	10. 기업에 대한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지만, 기업 활동에 대한 방해로 비춰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	○ 원칙적으로 임의수사를 활용하고, 강제수사는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 (부산지검)
	11.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검찰개혁과 함께 끊임 없는 지정노력을 할 것	○ 검사 및 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비위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대응토록 조치 하겠음 (부산지검)
	12. 검사 1인당 사건 처리 건수가 대체로 평균 이상이므로 과중한 업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2019. 10. 21.부터 2020. 3. 18.까지 ‘공판 중심의 형사부 운영방안’을 시행하여, 검사의 업무부담 경감 및 사건처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음 - ① 형사부 별로 1개 검사실을 신속 처리 검사실로 지정하여 다수 동종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이외 검사실에서 중요 사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② 공소유지에 필요한 증거수집 지원팀을 신설하여 형사부 지원 - ③ 직무대리배당 사건을 확대함으로써, 형사부 업무경감 (대구지검) ○ 검사들의 업무과중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업무를 과감히 폐지하고, 형식적인 교육 및 회의를 축소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검사들을 형사부에 우선 배치하여 업무 부담을 줄여 나가도록 노력 하겠음 (부산지검)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3. 피의사실 공표행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필요하나,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법리 또는 입건 경위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할 것	○ 피의사실공표죄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데 공감함 - 피의사실공표죄는 동죄의 보호법익과 국민의 알권리, 언론의 자유 사이의 조화를 위한 비교형량이 중요하므로, 수사 시 이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결론을 도출하겠음 (울산지검)
	14. 창원 SM사건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1년 7개월째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수사인력 추가 투입 등을 통해서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할 것	○ 관련 사건은 2020. 1. 9. 혐의없음 처분하였음 (창원지검)
	15.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는 더욱 철저한 수사과 엄중한 처벌을 할 것	○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히 대응하겠음 (창원지검)

3. 2019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산하기관)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대한법률 구조공단	1. 공단 이사장과 소속 변호사들 간 진행중인 소송에서 이사장 소송 비용을 공단이 국가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 이사장과 공단 소속 변호사들간 민사소송 당사자는 이사장 개인이 아닌 대한법률구조공단인바, 공단이 당사자가 된 소송에 대해서는 공단 규범상 공단이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음 ○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도·감독 하겠음
	2. 변호사 1인당 사건처리 건수가 705건에 이르는 등 공단의 업무 과부하로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므로 법무부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몇 년 간 공단에 배치된 공익 법무관의 숫자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 공단 소속변호사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은 사실임 ※ 공단 배치 법무관이 '19년 133명에서 '20년 85명으로 감소 ※ '19년 공단 변호사 1인당 평균 사건처리 건수 약 870건(집행 등 단순 신청사건 포함) ○ 법무부는 안정적인 법률구조 사업을 위해 공단 내 소송인력 확충에 노력하고 있으며, 2019년 소속 변호사를 20명 증원하기 위한 예산을 국회에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음 - 향후 소속변호사의 증원을 위한 예산 확보, 직제개정 등을 위해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하겠음